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7일까지에서 2025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새만금박물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새만금개발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1.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3년 6월 7일”을 “2025년 6월 7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2023년 6월 7일”을 “2025년 6월 7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3장 <u>한시조직</u>
제12조(신재생에너지기반과)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 호에 따라 <u>2023년 6월 7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재생 에너지기반과를 둔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기반과) ① ----- ----- ----- ----- <u>2025년 6월 7일</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한시정원) 새만금박물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u> <u>년 3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u> <u>한시정원을 새만금개발청에 둔</u> <u>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